

의안번호	2211995
의 퇴 인	황정아 의원
회 답 일	2025. 8. 6.
추계번호	25E424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내국인 우수 인력의 국내복귀에 대한 소득세 감면 확대 및
적용기한 5년 연장

【비용추계서】

I. 비용추계 결과

- 내국인 우수 인력 국내복귀에 대한 소득세 감면을 확대하고 적용기한을 5년 연장함에 따라 소득세는 2027년 25.1억원, 2036년 92.2억원 등 2027년부터 2036년까지 10년간 총 620억원(연평균 62억원) 감소할 것으로 추계
- 개정안에 따라 내국인 우수 인력 국내복귀에 대한 소득세 감면기간을 취업일로부터 20년으로 연장할 경우 세수효과가 최대 2050년까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향후 국내복귀자들의 평균적인 소득 변화 및 근로지속 여부 등을 예상하기 어려우므로 동 추계는 2036년까지의 세수효과를 제시
 - 참고로 국내복귀자가 20년간 계속 근로한다고 가정하고 명목임금 상승 등을 반영하지 않을 경우, 세수효과는 2050년까지 약 -1,450억원으로 단순 추계됨

[표 1] 개정안에 따른 재정수입 변화: 소득세

(단위: 억원)

	2027	2028	2029	2030	2031	2032
내국인 우수 인력의 국내복귀에 대한 소득세 감면 확대 및 적용기한 5년 연장(안 제18조의3)	-25.1	-33.5	-41.9	-50.3	-64.2	-69.8
	2033	2034	2035	2036	누적	연평균
	-75.4	-81.0	-86.5	-92.2	-620	-62

I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18조의3 (내국인 우수 인력의 국내 복귀에 대한 소득세 감면)	○ 내국인 우수 인력의 국내 복귀에 대한 소득세 감면 확대 및 적용기한 5년 연장 - 감면율: (현행) 50% → (개정안) 75% - 감면기간: (현행) 취업일로부터 10년 → (개정안) 20년 - 적용기한: (현행) 2025년 12월 31일 (개정안) 2030년 12월 31일	

Ⅲ.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

1.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여부	비고(추계 미 실시 사유)
1	안 제18조의3 (내국인 우수 인력의 국내복귀에 대한 소득세 감면)	○	

2.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

- 부칙에 따라 개정안이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내국인 우수 인력의 국내복귀에 대한 소득세 감면의 세수효과는 근로소득 연말정산이 이루어지는 시점에 발생할 것으로 가정함
 - 부칙에 따라 시행 당시 취업일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기존 복귀인력에도 개정안이 적용될 경우, 기존 2020~2025년 취업자의 감면을 및 감면 기간 변동에 따른 세수효과도 고려하였음
 - 개정안에 따르면 취업일로부터 20년간 소득세 감면이 이루어지므로 2030년 국내복귀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의 세수효과는 2050년까지 발생함
- 내국인 우수 인력의 국내복귀에 대한 소득세 감면에 대한 적용기한 연장의 세수효과는 최근까지 조세지출 실적을 바탕으로 추정하되, 누적된 실적을 연단위로 환산 후 추계
 - 「조세지출예산서」 상 감면실적은 과거 국내복귀자에 대한 누적액으로, 해당 실적액을 연단위로 환산하고, 감면을 상향(50 → 75%)에 따른 효과를 비례적으로 반영한 금액을 연도별로 배분하여 개정안의 세수효과를 산출
 - － 동 특례의 경우 2020년 국내로 복귀한 자부터 적용되기 시작했으며, 연도별 감면 실적은 매년 복귀자에 대한 감면액이 누적된 금액

	감면액 발생 시점						
	2021	2022	2023	2024	2025	2026	2027
2020년 복귀자							
2021년 복귀자							
2022년 복귀자							
2023년 복귀자							

- 부칙에 따르면 종전에 국내로 복귀한 내국인도 적용을 받으므로, 이들의 경우 취업 후 10년까지는 감면을 상향만 세수효과에 반영하며, 이후 기간은 적용기한 연장의 효과까지 세수효과로 반영

3.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

(1) 제도 개요 및 감면실적

□ (제도개요) 국외에서 5년 이상 근무한 우수 인력이 국내에 거주하면서 연구기관등에 취업하는 경우, 근로소득에서 발생하는 소득세의 50%를 10년간 감면함

- 대상자: 자연계·이공계·의학계 분야의 박사학위 소지자로 국외 대학 및 연구기관 등에서 5년 이상 근무한 자 중 국내로 복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구기관 등¹⁾에 취업하여 근로소득을 받는 자

- 감면내용: 취업일부터 10년* 동안 소득세 50% 세액감면

* 2022년 개정을 통해 감면기간이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 (기존 복귀자에게도 적용)

- 현행 적용기한: 2025년 12월 31일 이전에 취업한 자

1)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6조의3 제2항

1.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 2 제1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
2.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과 그 부설 연구기관
3.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2조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및 그 부설 연구기관
4.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 산업대학, 전문대학 또는 기술대학 및 그 부설 연구기관
5. 「한국해양과학기술원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해양과학기술원
6. 「국방과학연구소법」에 따라 설립된 국방과학연구소
7.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2조에 따른 전문생산기술연구소
8.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에 따라 설립된 산업기술연구조합

- (감면실적) 동 특례는 2020년 국내복귀자에게 적용되기 시작한 후, 연도별로 감면실적이 불규칙하게 나타나고 있음

[표 2] 내국인 우수 인력의 국내복귀에 대한 소득세 감면 실적: 2019~2024년

(단위: 억원)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p
감면실적	신설	0	17	11	15	25

주: p는 잠정치

자료: 기획재정부, 「조세지출예산서」, 각 연도

(2) 추계 방법

- (추계방법) 감면실적을 연단위로 환산 후, 2022~2024년 실적 평균이 유지된다는 전제 하에 개정안의 세수효과 추정

- 각 연도별 감면실적은 과거 국내복귀자에 대한 감면액이 누적된 금액으로, 이를 연단위로 환산
 - 2022년 ~ 2024년 연단위 환산액의 평균은 5.6억원

[표 3] 내국인 우수 인력의 국내복귀에 대한 소득세 감면 실적 연단위 환산

(단위: 억원)

	2021	2022	2023	2024
「조세지출예산서」 상 감면실적(A)	17	11	15	25
2020년 복귀자				
2021년 복귀자				
2022년 복귀자				
2023년 복귀자				
연단위 환산액 (A/누적연도□□)	17	5.5	5	6.25

- 연단위 환산액의 평균(5.6억원)을 기준으로 감면을 상향(50→75%)의 효과를 비례적으로 반영하면 연간 2.8억원($5.6\text{억원} \times 1/2$) 수준이며, 적용기한 연장의 효과는 연간 8.4억원($5.6\text{억원} \times 1.5$)으로 계산됨
 - 2025년까지 국내로 복귀한 자의 경우, 취업 후 10년까지는 감면을 상향효과만 세수효과에 반영하며, 이후 기간은 적용기한 연장의 효과를 반영

[표 4] 내국인 우수 인력의 국내복귀에 대한 소득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의 세수효과 발생

	2027	2028	2029	2030	2031	2032	2033	2034	2035	2036
2020년 복귀자	2.8	2.8	2.8	2.8	8.4	8.4	8.4	8.4	8.4	8.4
2021년 복귀자	2.8	2.8	2.8	2.8	2.8	8.4	8.4	8.4	8.4	8.4
2022년 복귀자	2.8	2.8	2.8	2.8	2.8	2.8	8.4	8.4	8.4	8.4
2023년 복귀자	2.8	2.8	2.8	2.8	2.8	2.8	2.8	8.4	8.4	8.4
2024년 복귀자	2.8	2.8	2.8	2.8	2.8	2.8	2.8	2.8	8.4	8.4
2025년 복귀자	2.8	2.8	2.8	2.8	2.8	2.8	2.8	2.8	2.8	8.4
2026년 복귀자	8.4	8.4	8.4	8.4	8.4	8.4	8.4	8.4	8.4	8.4
2027년 복귀자		8.4	8.4	8.4	8.4	8.4	8.4	8.4	8.4	8.4
2028년 복귀자			8.4	8.4	8.4	8.4	8.4	8.4	8.4	8.4
2029년 복귀자				8.4	8.4	8.4	8.4	8.4	8.4	8.4
2030년 복귀자					8.4	8.4	8.4	8.4	8.4	8.4

(3) 추계결과

- 내국인 우수 인력 국내복귀에 대한 소득세 감면을 확대하고 적용기한을 5년 연장함에 따라 소득세는 2027년 25.1억원, 2050년 8.4억원 등 24년간 총 1,449억원(연평균 60.4억원) 감소할 것으로 추계
- 개정안에 따라 내국인 우수 인력 국내복귀에 대한 소득세 감면기간을 취업일로부터 20년으로 연장할 경우 세수효과가 최대 2050년까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향후 국내복귀자들의 평균적인 소득 변화 및 근로지속 여부 등을 예상하기 어려우므로 동 추계는 2036년까지의 세수효과를 제시

[표 5] 개정안에 따른 재정수입 변화: 소득세

(단위: 억원)

	2027	2028	2029	2030	2031	2032
내국인 우수 인력의 국내복귀에 대한 소득세 감면 확대 및 적용기한 5년 연장(안 제18조의3)	-25.1	-33.5	-41.9	-50.3	-64.2	-69.8
	2033	2034	2035	2036	누적	연평균
	-75.4	-81.0	-86.5	-92.2	-620	-62

IV. 부대의견

- 없음

V. 작성자

□ 성명

국회 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세제분석1과	이정훈	박연서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이정훈	02-6788-4669	nororand@assembly.go.kr

3